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4.24.(금) 배포시점 배포 2026.4.24.(금)

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□ 보도 내용

o 2026.4.24. 헤럴드경제는 「'한국형'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, 등장 임박... '연령 제한' 등 부상」 기사를 통해

- 방미통위가 지난해 진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의 제언대로 국내도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경우, 연령 제한이 '16세 미만'으로 설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도

□ 방미통위 입장

o 위 기사에서 인용된 정책연구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의 연구 결과물로서, EU·영국·호주·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각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책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며, 방미통위의 공식입장이 아님

o 향후 방미통위는 SNS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, SNS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은 물론 보호대상자이자 스스로 권리주체이기도 한 청소년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소년·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한편, 현재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7건의 법률안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

담당 부서	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최선경 (02-2110-1510)
		담당자	사무관	강준성 (02-2110-151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참고 자료>

< 청소년 SNS 과의존 방지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>

윤건영 의원안	■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
김장겸 의원안	■ 중독성 콘텐츠 정의 신설, 중독성 콘텐츠 관련 청소년 보호 시책 마련 ■ 법정대리인 미동의 시 시간순 콘텐츠 노출 및 특정 시간 알림 제한
안철수 의원안	■ SNS, 알고리즘 정의 신설 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 중 SNS 제공자는 19세 미만에 대해 친권자 등 미동의시 정보추천 알고리즘 금지, 심야시간대 정보추천 알고리즘은 별도 동의 필요
조정훈 의원안	■ SNS 정의 신설, SNS 과도한 이용 관련 청소년보호 시책 마련 ■ SNS 제공자는 16세 미만에 대하여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, 정보추천 알고리즘 허용 여부, 그밖에 과몰입 예방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친권자 확인 필요
김태선 의원안	■ 알고리즘 정의 신설 ■ 14세 미만에 대한 알고리즘 활용 광고 및 정보추천 서비스 제공 시 본인·법정대리인 동의 필요, 심야시간대 제공 시 별도 동의 필요
이연희 의원안	■ SNS, 알고리즘 정의 신설 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 중 SNS 제공자는 19세 미만에 대한 정보추천 알고리즘 금지, 14세 미만은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동의 필요
황운하 의원안	■ SNS, 개인맞춤형추천, 이용유도 기능 정의 신설 ■ 친권자 등 미동의시 개인맞춤형추천, 이용유도 기능 제한 ■ 청소년 이용자 과의존 위험경고 및 개인 맞춤형추천 차단 방법 등 고지